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59호 2022. 9. 8(목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2-1812호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입법예고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2-1815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----- 1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2 -1812호

「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을 시민·공무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남원시의 공무원 당직근무 편성 시 당직 책임관의 인력 기준을 변경하고,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당직 근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-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

나. 당직 근무자 편성 기준의 변경(안 제6조, 별표)

- 일직 당직 책임관의 편성 기준 변경

(현행) 5급·6급 과장, 담당 → (변경안) 6급

- 명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편성 <신설>

당직 책임관 : 1명(실·과장), 당직 책임원 : 2명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2. ~ 2022. 9. 23.(21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085), 팩스(063-620-6704), 이메일(hk0327@korea.kr), 직접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등

5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 : 붙임

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8. .
 제출자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의 공무원 당직근무 편성 시 당직 책임관의 인력 기준을 변경하고,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당직 근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 -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
- 나. 당직 근무자 편성 기준의 변경 (안 제6조, 별표)
 - 일직 당직 책임관의 편성 기준 변경
(현행) 5급·6급 과장, 담당 → (변경안) 6급
 - 명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편성 <신설>
당직 책임관: 1명(실·과장), 당직 책임원: 2명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2. 8. . ~ 2022. 9. .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 - 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
조례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편성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1998.11.21, 2000.4.1, 2001.1.20, 2002.12.31, 2004.4.23., 2006.1.4, 2006.12.28., 2010.12.29., 2014.5.30., 2020.8.14.>

당직근무자의 편성(제6조 관련)

구 분		계	당직책임관	당직원
본 청	명절(설, 추석)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3명	1명(실·과장)	2명
	일직	3명	1명(6급)	2명
	숙직	3명	1명(6급)	2명

-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직근무자 편성
 - 부서장의 책임하에 1~2명으로 편성 운영하되, 당직근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인경비시설로 대체하고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.
 - 숙직무인화 사업소, 읍면동 근무자
 - 근무시간 종료 이후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를 시 당직실로 착신전환하고 무인경비 잠금장치 시행 후 재택근무
- ※ 청사방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근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,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화재, 도난,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----- 「<u>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</u>」 제8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 (생략)</p> <p>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. <u>다만, 일직의 당직책임관은 실·과장 및 여성공무원 중 담당주사로 하며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책임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. <u>다만,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편성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	개 정 안				
[별표] 당직근무자의 편성(제6조 관련)		[별표] 당직근무자의 편성(제6조 관련)				
구 분	계	당직책임관	당직원			
본 청	일 직	3	1(5·6급) 과장, 담당	2		
	숙 직	3	1(6급)	2		
		구 분	계	당직책임관	당직원	
		본 청	3명	1명(실·과장)	2명	
			명절(설, 추석)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3명	1명(실·과장)	2명
			일직	3명	1명(6급)	2명
		숙직	3명	1명(6급)	2명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직근무자 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장의 책임하에 1~2명으로 편성 운영하 되, 당직근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인경비시설로 대체하고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. ○ 숙직무인화 사업소, 읍·면·동 근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시간 종료 이후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 를 시 당직실로 착신전환하고 무인경비 잠금장치 시행 후 재택근무 <p>※ 청사방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근무 인원을 증원 할 수 있 다.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○ ----- ----- ----- ----- ※ ----- ----- ----- 				

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붙임

관련 법령

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제8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,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	
	주 소		
3. 의 견			
4. 기 타	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	
비 고	<p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
남원시 공고 제2022 - 1815호

「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‘출향인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, 교류·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용어 ‘출향인’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1항)

- (현 행)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
- (변경안)
 -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, 둔 적이 있는 사람
 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2. ~ 2022. 9. 23.(21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행정지원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6099), 팩스(063-620-6704), 이메일(yooraa23@korea.kr), 직접 방문, 남원시 홈페이지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(☎063-620-60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

1. 개정이유

‘출향인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, 교류·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용어 ‘출향인’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1항)

- (현 행)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
- (변경안)
 -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, 둔 적이 있는 사람
 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가족관계등록법」, 「주민등록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2. 9. 2. ~ 2022. 9. 23.(21일간)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4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출향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.

가.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, 둔 적이 있는 사람

나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출향인”이라 함은 남원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,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을 말한다.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출향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「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, 둔 적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별첨

관련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

□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

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□ 주민등록법

제6조(대상자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“거주지”라 한다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1. 거주자: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(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)

2. 거주불명자: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

3. 재외국민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「해외이주법」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

가.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
나.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(營內)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14. 1. 21.>

별첨

비용추계서

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<p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